

## ② 개정조문

### 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>

개정 전	개정 후
제5조의2(농업법인의 기준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 업법인”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.  1.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. 다만, 「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 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 년을 한도로 한다)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 2. (생 략)	제5조의2(농업법인의 기준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 1. 법인 설립 당시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(농업인으로 한정 한다)에 해당하는 사람 2. (현행과 같음)

#### ■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